



美 CBP,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 4/20 가동

美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2/20)과 CIT의 관세 환급 명령(3/4)에 따라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 환급 절차를 마련했다. CBP는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인 CAPE를 도입하고, 4월 20일부터 1단계 환급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모든 IEEPA 관세는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 대상이지만, 1단계에서는 일부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만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IEEPA 관세 환급은 기존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protest)와 달리,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자동 환급은 아니므로 수입신고자(IOR) 또는 통관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업들은 ACE 포털 계정과 ACH 환급 등록을 미리 마치고 납부된 IEEPA 관세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1. 배경

▶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2/20) 이후 美 국제무역법원(CIT)은 모든 수입자에게 IEEPA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3/4)

* CIT는 계류 중인 2천여 건의 소송 가운데 Atmus Filtration 사건을 대표 사건으로 선정하여 환급 명령을 내림

- 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에게 관세를 환급하도록 명령
- 美 관세청(CBP)에 모든 수입자 대상 관세환급 방안 마련을 지시

▶ 법원 명령에 따라 CBP는 IEEPA 관세 환급 전용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4/20부터 가동 예정

- 5,300만 건이 넘는 IEEPA 관세 환급은 일반적인 환급 절차인 사후정정 신고(PSC), 이의제기(protest)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규모로, CBP는 IEEPA 관세 환급 전용 통합 시스템을 45일 내 구축하겠다고 발표(3/6)
- 새로운 시스템(CAPE) 도입으로 사후정정신고를 통한 IEEPA 관세 환급은 금지됨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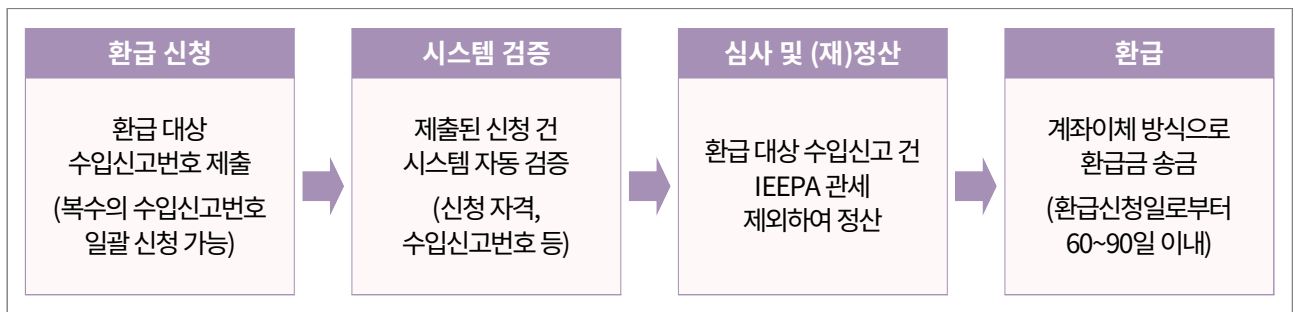
▶ IEEPA 전용 관세 환급 시스템은 기존 사후정정신고·이의제기 방식과 달리,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 복수의 수입신고 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 가능

관세환급절차 비교

일반적 관세환급		구분	IEEPA 관세 환급(CAPE)
정산 전 또는 정산 후 180일 이내		환급 대상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 (정산 여부 무관)
정산 전	사후정정신고(PSC)	환급 방식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CAPE)을 통해서만 가능
정산 후	이의제기(Protest)		
수입신고별 처리		신청 방식	수입자별 여러 건의 신고(수입)를 일괄 신청 가능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의 환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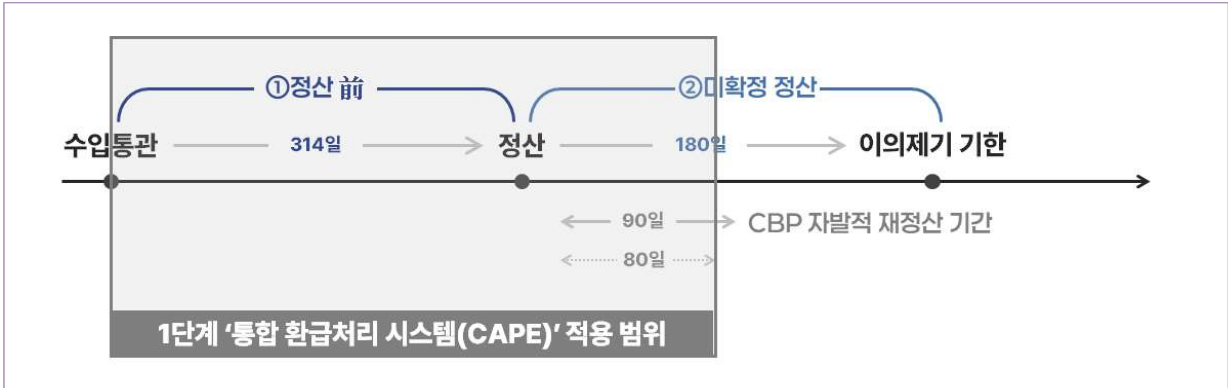
▶ (환급 대상) 모든 IEEPA 관세 납부 수입신고 건

- CIT는 기존 관세 환급 명령의 적용 범위를 **최종 확정된 정산 건(final liquidation)까지 확대(3/27)**하여,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 환급 대상임**을 명확히 함
- 1단계 시스템에서는 일부 **①미정산** 및 **②정산 후 80일 이내 건**에 대해 우선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
 - CBP는 규정상 정산 후 90일까지 자발적인 재정산(reliquidation)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처리 시간을 감안하여 **정산 후 80일 이내 건**까지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설정
 - CBP는 1단계 시스템으로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 중 약 63%를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¹⁾

1) Brandon Lord, "Declaration of Brandon Lord Responding to March 20, 2026 Court Order," Court No. 26-01259

- 정산 후 80일이 지난 건, 사후정정신고·이의제기 제출 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 등은 관련 기능이 추가로 개발된 이후 환급 가능할 예정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 적용 대상



*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통관·정산 절차 위에 CAPE 적용 대상을 표시

IEEPA 관세 환급 범위

법원 명령	시스템상 환급 가능 범위
모든 IEEPA 관세 납부 수입신고 건	1단계
	일부 ▲미정산, ▲정산 후 80일 이내 건
	↓
	후속 단계
	▲정산 후 80일 경과 건, ▲PSC·Protest 제출 건, ▲AD/CVD 부과 건 등으로 확대 예정

- 환급금에는 납부한 IEEPA 관세 원금과 함께, 분기별 美 국세청(IRS) 고시 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가 포함됨

▶ (환급 신청) 자동 환급이 아니므로 수입신고자 또는 통관대리인의 신청 필요

- (신청 주체) 수입 통관신고서 상의 ‘수입신고자(Importer of Record, IOR)’ 또는 해당 신고를 대리한 통관대리인
- (사전 준비사항) ① 통관시스템인 ACE 포털상의 계정, ② 미국 내 은행계좌 정보를 포함한 전자이체 환급(ACH Refund) 등록 등이 준비되어야 함

* IEEPA 관세 환급 절차와는 별개로, CBP의 관세 환급 방식은 ‘26.2.6.부터 전자이체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기존 수표(check) 방식의 환급은 중단됨

- ACH 은행정보 미등록 시 CBP는 계좌정보 등록까지 환급을 보류하며, 19 U.S.C. 1505(d)에 따라 이러한 지연에 대해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²⁾

2)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6.1.2.), “Electronic Refunds,” 2025-24171 (91 FR 21)

- 미국 계좌 개설이 어려운 해외 기업은 Form 4811을 통해 제3자를 환급 수령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제3자가 환급 대상 수입신고서에도 4811 통지대상자(Notify Party)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제출 자료)** CBP가 제공하는 템플릿(CSV 형식)에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entry number) 기재 후 제출

▶ (환급금 지급) 환급 신청 접수 후 60~90일 이내 지급 예정

- 다만, 관세회피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CBP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기업 유의사항

① (환급 대상) 2/20 대법원 위법 판결 대상인 IEEPA 근거 상호관세 및 '마약관세 (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에 한해 환급 가능

-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품의 경우 非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26.2.20.)는 환급 가능

IEEPA 대상 관세 조치

대상 가치	적용 관세	부과 근거	관세환급 여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품목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불가
非철강·알루미늄·구리	상호관세	IEEPA	가능

② (환급 주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IOR) 및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만 환급 신청 가능

- 수출가격 인하 등으로 수출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어 수출자가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수출자는 CBP에 직접 환급 신청 불가 (※단, 수출자가 통관신고서 상 IOR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 환급 신청 가능)
- FedEx는 IEEPA 관세 환급 시 환급금의 화주 반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³⁾, Fedex를 활용한 통관 건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3) <https://www.fedex.com/en-us/shipping/international/us-tariffs-impact.html>

③ (환급 방식) CBP의 기존 환급방식인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protest) 방식이 아닌 CAPE 시스템을 통한 수입자 신청 기반의 환급 방식 적용

- 처리 방식은 간소화되었으나, 여전히 자동 환급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함에 유의
- 환급은 통관(entry) 건별이 아닌 수입신고자(IOR) 단위로 일괄 처리 예정

④ (사전 준비) 모든 환급 절차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4/20 시스템 개시에 맞춰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필요

- ACE 포털상 계정과 미국 내 금융계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미국 계좌가 없을 경우 제3자 지정도 가능(※ACE 계정과 미국 내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환급 수령 불가)
- 제3자 환급 수령을 위해서는 해당 제3자가 Form 4811(통지 대상자 지정·변경) 또는 ACE 포털상 지정되어 있고, 동일한 정보가 통관신고서에도 반영되어 있어야 함
- IEEPA 관세 납부 통관 건을 CSV 형식으로 업로드 가능하도록 사전 수입신고번호 수집·정비가 필요

⑤ (관세 검증 가능성) CAPE 시스템 내 검증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기존 관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CBP 포털 안내상 환급 소요 기간은 신고 승인 후 60~90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관세 과소납부 등 납부 적정성 관련 이슈가 없는 경우로 한정

⑥ (소송 필요성 여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 환급 의지를 표명하고 환급 시스템 가동 계획을 밝힌 만큼, 美 행정부를 상대로 한 환급 소송은 사실상 불필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CIT 판결(3/4)에서 관세 환급이 모든 수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CBP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CIT 명령에 따라 환급 시스템을 구축 중
- 다만 환급 신청 건에 대해 CBP가 수리하지 않거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환급액 또는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법적 대응(소송)이 필요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